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고시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28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	5
참고 1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0.

3. 회부연월일 : 2025.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
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
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
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9(학자금 무상지급 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 전체 학자금 지원 현황, 평균 등록금 수준, 물가상승률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이하 “장학재단법”이

- 1) 장학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라 함)은 “학자금 지원”을 ①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²⁾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사업 주체로 한국장학재단을 선정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자금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이찬희, 권기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 영향 요인 연구,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24권제1호, p27., 2024.3.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³⁾에는 국가장학금의 종류 및 학자금 지원구간⁴⁾ 정보, 신청절차 및 학자금 지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안내하면서,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제공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학자금 지급 기준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재단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3

3)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4)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인

5) 참고 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고 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본정보 입력

※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결혼 여부 *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학생 본인이 혼인한 경우(법률혼) 기준으로 표기, 혼인 후 이혼 시 재혼 전까지는 이혼으로 표기(미혼 아님)
복지자격여부 (기초/차상위/해당없음) *		☐ 기초 ☐ 차상위 ☒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평가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차상위지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 *	학생소득	만원/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전전본기),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양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재산소득(각종 수당, 연금급여, 공과 등) * 소득감액시 유의사항 학생소득: 근로/사업소득 130만원 한도 정액 공제 후 금액 단, 일용소득 공제(공제율 50%)가 큰 경우 해당금액 공제 후 금액 주거임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본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금액
	가구원소득	만원/월	
일반재산	주택건축물	만원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토지	만원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임차보증금	만원	주택, 상가 등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합계액 ※ 주거 목적의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곱하여 입력
	기타재산	만원	선박, 항공기, 동산, 명품재산, 회원권, 조합원양주권, 분할권, 어업권 등의 합
차량가격		만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격 ※ 단, 정액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
금융재산		만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부채		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잔액 등

모의계산하기 >

자료: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